

申 珏 澈

전자적기록의 증거능력과 송달에 관한 법적 검토

사회전반에 걸쳐 커다란 변혁을 가져오고 있는 정보화의 물결은 전통적인 법체계의 대폭적인 수정·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본지는 외국의 법제동향과 우리나라의 입법상 대응 또는 고려할 문제를 연재, 정보화사회로 가는 지름길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註

I. 머리말

지난호(91. 8)에서 전자적기록물의 문서성을 인정하는 입법례와 그 법적효력을 검토한 바 있다.

그러나 한걸음 발전하여 전자적기록에 대한 증거능력이나 공신력이 확보되지 아니한다면, 이용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예컨대, 중앙전산본부(CPU)에서 또는 단말기 상호간에 상대방의 화일에 전송한 전자적정보가 의사표시의 수단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종래의 같이 지면으로 출력하여 발송인과 직인등을 찍은 다음 사송이나 우편으로 송달한다.

이런 경우 문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데는 최소한 몇일

을 소요하게 돼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낭비가 크고, 컴퓨터 네트워크시스템의 기능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따라서 전자적기록물(디스켓, 테이프등)의 법적성격을 인정함에 있어서, 이들 기록물의 증거능력 내지는 공신력의 확보와 컴퓨터네트워크에 의한 정보전송이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네트워크사회(정보화사회)로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II. 전자적기록의 인증제도의 필요성

전자적기록물의 송달에는 일반적으로 상호간 당사자가 식별할 수 있는 「전자식서명」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즉 정보전송자(문서 발송인)와 정보수신자(문서 접수자)

사이에 약속된 암호코드나 부호, 기호등을 통하여 상대방이 권한있는 자임을 식별할 수 있는 인증제도가 「전자식서명」이다.

전자적기록물(디스크, 테이프등) 자체에서 작성자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하는 ‘작성명의인’의 요건을 일반문서에서와 같이 동일하게 요구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거의 불가능한데, 이미 소개한 바와 같이 서독, 일본, 미국 등 컴퓨터문명 선진국가의 입법례에서도 명의인의 요건을 크게 완화하고 있다.

앞으로 전자우편이나 전자사서함 같은 제도가 널리 보급되어 통상적인 관례로 정착된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겠으나 현단계에서는 개별적으로 법에서 그 인증방법이나 증거능력 보유문제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전자적기록물의 인증방법과 증거능력을 추정하는 입법조치가 있어야 서로 안심하고 네트워크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서

는 이를 입법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과 미국의 입법례를 참고로 소개하고자 한다.

III. 전자적기록물의 증거능력

일본에서는 등기사무를 전산화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처리 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의 원활화를 위한 조치등에 관한 법률」을 1985년 5월에 제정했다.

이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일반문서가 전자기록화되었을 때, 그 차이점을 법으로 명문화하고 있는데, 동법 제4조의 경우 「등기화일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명하는 서면(이하 “증명서”라 한다)을 교부받을 수 있으며」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령용어로서 「원본」이라 함은 작성자가 직접 작성한 유일한 문서이며, 「등본」은 문서의 원본에 대응하는 용어로서 원본과 동일한 문자와 부호를 쓰고, 원본의 내용을 동일하게 복사한 서면을 말한다.

그러나 「증명서」는 등록화일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문자, 부호등이 원본과 동일하지 아니하고 (원본은 수작업 문서인데 반하여, 증명서는 컴퓨터로 출력된 인쇄체임), 그 내용만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여 법적으로

로 종래의 「등기부등본과 같이 본다」라고 규정하였다.

이 규정의 특징은 「등본」과 「증명서」를 구분하고, 전자적 기록화된 정보에 대하여 증명제도를 채택함으로써 종전의 등본·초본과 동일하게 민법, 민사집행법, 기타 다른 법령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이 개별법에 의거하여 특정문서에 한해서만 법적효과를 부여하고, 개인이나 기업등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사문서(네트워크시스템으로 전송·처리되는 거래요구서, 계약서, 대금결재서 등), 즉 전자정보처리에 대해 법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한 업무처리에 불신이 생겨 서로가 이용을 회피할 것이라는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현행법에서는 통상 계약서 등 의사표시를 문서화할 경우 당사자가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함으로써 그 문서가 진실되게 성립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민사소송법 제329조) 즉 종래의 법개념에서 서명·날인이라 함은 본인이 직접 기명하고 도장을 찍을 때 이를 직접 확인하는 등 3단계의 절차가 있어야 진실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3단계(확인·기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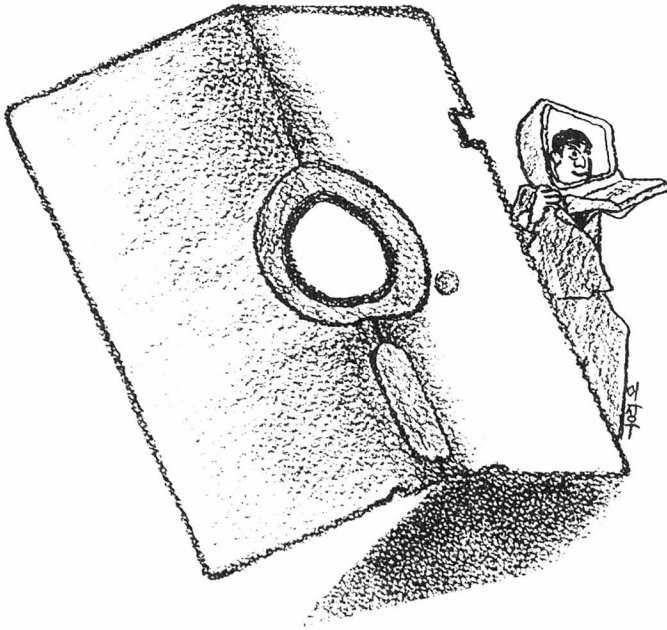
·날인) 과정을 무시한 컴퓨터 네트워크에 의한 문서의 처리, 전송에 대해 법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문제는 현행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으로는 곤란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컴퓨터네트워크시스템에 의한 계약행위는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VAN네트워크에 의하여 정보가 교환되고, 통신회선을 통하여 상대방의 화일에 등록(접수)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해 거래계약의 진실성 판단 문제가 심각히 대두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종래와 같은 내용 확인·서명·날인이 없기 때문에 진실성의 입증방법이 현행 법에는 없음).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으로는 최근에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전자식 서명」이 법적효과를 갖도록 입법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이러한 전자적기록의 증거능력 부여에 대하여 법에 명문화가 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도 종래의 민사소송법 규정(제329조)만을 지나치게 기계적으로 적용, 일괄적으로 부정판결을 내려서는 곤란하며, 정보화의 흐름에 맞지 않을 것이다.

미국·일본등 외국의 경우 아직 법에 명문화가 되어 있지 않지만 법원에서 전문감정인을 출석시켜 프로그램을 분석



하고, 전후과정을 조사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한 다음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으로 경험법칙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

즉, 이와 같은 법해석의 태도는 법의 경직성을 피하면서 하루가 다르게 발전·변화하는 첨단과학문명과 적절하게 조화·적응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판결례가 반복하여 정착된 다음에 입법하는 것이 또한 순리인 것이다.

또한 첨단과학문명의 발전을 기존의 법질서(법은 비교적 고정화 상태인 반면에 과학문명은 계속 변화·발전하고 있음)가 가로막아 과학화·정보화를 저해한다면 국가발전 측면에서도 크게 우려되는 것

이다.

IV. 증거능력 추정의 입법례

컴퓨터문명의 선진국인 미국에서도 전자적 방식에 의한 거래에 대해 그 법적성격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다.

미국의 경우는 소비자보호라는 관점에서 1978년에 연방 EFT법(전자자금이동법-Electronic fund Transfer Act)을 제정하여, 전자적방식의 대금 거래와 결제에 대한 증거능력의 추정등 법적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서독의 경우는 미국연방 EFT법 처럼 특별법은 없으나 판례, 학설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보통거래약관규제법」의 적용

을 받음으로써 증거능력을 부분적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국제기구인 「국제거래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에서도 현재 이에 관한 모델지침을 연구중에 있으며, 회원국에 대하여 모델입법을 발표하고 각국의 입법조치를 권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V. 전자적방식에 의한 전송(송달)

전자적기록에 대한 증거능력의 추정과 함께 중요한 문제는 전자적방식에 의한 데이터의 전송(송달)이 법적으로 정보(문서-의사표시)의 발송과 접수로 볼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즉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에 의하여 필요한 정보(문서-거래요구서)가 전송되어 상대방의 컴퓨터화일에 등록(접수)되면 이것을 종래의 문서접수나 신고, 통지등과 동일하게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라 하겠다.

현행 각종의 민원사무 즉, 신고·신청·승인등은 ‘문서’로서 해당기관에 접수되어야 하며(정부공문서규정 제27조), 각 단행법에서도 일정한 서식에 의하여 문서로서 접수되어야만 법적효력을 인정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전

자적방식에 의한 전송에 대해 법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하는 새로운 입법례가 있어 정보사회로의 진입을 위한 법적 뒷받침으로서 청신호가 되고 있다. 다음과 같이 전문을 소개한다.

매우 복잡한 세관업무의 전산처리를 위하여 90년 12월31일 전문개정된 「관세법」이 바로 그것이다.

동법에서는 제242조의 6 (전산처리설비의 이용)을 신설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세관장은 이 법에 의한 신고·신청·승인·허가·면허·교부·통고등을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할 수 있으며,

② 위와 같은 신고·신청·승인·허가·면허·교부·통고등은 전산처리설비에 갖추어진 화일에 등록된 때에 세관에 접수되거나, 세관에서 발송한 것으로 보고, 통지등이 등록된후 통상 출력에 소요되는 시간이 경과된 때에 당해 통지등이 송달된 것으로 본다.」

위의 내용을 요약하면 관세업무에 필요한 각종 신고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할 수 있고, 전송 또는 접수되는 전자적기록은 통상 출력에 소요되는 시간이 경과된 때에 당해 통지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이는 즉, 컴퓨터네트워크에 의하여 정보가 송달되는 것을 종래의 문서 송달과 동일하게

법률로 규정한 획기적인 입법례라고 볼 수 있다.

VI. 앞으로의 입법적 과제

전자적기록물은 변조나 위조를 하여도 그 흔적을 찾을 수 없으며, 참과 거짓을 식별할 수 없는 단점이 있고, 전자적방식에 의한 전송 역시 전문분야에서만 주로 이용할 뿐 아직 국민의 일상생활과는 거리가 멀고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중요한 권리·의무 관계에 있어서 통보(송달)가 전송으로만 처리된다면, 이를 제때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 커다란 불이익을 당하기도 한다.

따라서 정보화·과학화도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서둘러서 모든 전자적기록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여하거나 송달의 법적효력을 인정하는 입법은 또다른 피해나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하겠다.

결국 중요한 증거서류는 앞으로도 계속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 날인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분명하게 하고, 극히 필요하고 신속을 요하는 제한적인 사항에 관하여만 법으로 증거능력을 추정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하겠다. 이럴 경우 발생하는 수정(변조나 위조)은 반증에 의하여 진실을 밝힐 수가 있을 것이다.

모든

전자적기록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하거나 송달의

법적효력을 인정하는

입법은 또다른 피해나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극히 필요하고 신속을

요하는 제한적인 사항에

관하여만 법으로

증거능력을 추정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 . .